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34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  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  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지윤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「미술진흥법」(2023.07.25. 제정, 2024.07.26. 시행)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, 안 제4조).

○ 미술진흥계획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5조)

- 충청북도 미술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,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관련 사업 규정(안 제6조)

- 충청북도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 창작·전시, 전시·보존·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,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.

○ 지원(안 제7조)

-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「미술진흥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민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는 조문으로,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고,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「미술진흥법」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,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

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5조는 미술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, 미술진흥계획을 「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.
- 안 제6조에서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 창작 지원 사업, 미술 전시 지원 사업,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, 안 제7조 미술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미술진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미술진흥법」을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지역미술 정책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미술진흥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」 1부.

##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미술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미술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
2. 미술 창작·기획·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3.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4.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「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미술진흥 사업) 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미술 창작 지원 사업

2. 미술 전시 지원 사업

3. 미술 창작,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전시·보존·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

4.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

5. 미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

6.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

7. 미술 창작·기획·전시와 미술품 유통·감정,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·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·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

8.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)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포상) 도지사는 미술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